

2025년 드론산업 육성 지원 사업 모집 공고 [드론 원천기술 고도화 지원]

경기도내 드론 원천기술의 고도화 및 기술력 확보를 통해 차세대 드론 시장 선점 및 드론 활용 서비스 확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드론 원천기술 고도화」를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년 3월 27일
(재)경기테크노파크 원장

I 사업개요

- 사업명 : 2025년 드론산업 육성 지원
 - 세부사업명 : 드론 원천기술 고도화 지원
- 주최/주관 : 경기도/(재)경기테크노파크
- 사업기간 : 2025. 3. ~ 12.
- 사업목적 : 드론 원천기술 고도화를 지원하여 차세대 드론시장 선점을 위한 드론 활용 서비스 확대 기반 마련 및 도내 드론기업 경쟁력 확보

II 모집개요

- 모집기간 : 2025년 3월 27일(목) ~ 4월 23일(수)
- 지원대상 : 도내 드론관련 중소기업
 - * 본사 또는 공장 중 하나 이상이 경기도내 소재하고 있는 드론 중소기업
 - * 2023년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사업, 2024년 드론 분야별 기술고도화 지원 수혜기업 지원 불가
 - * 2025년에 경기도외 타 지역으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은 사업 참여 불가
- 지원내용 : 드론 원천(핵심)기술 개발 및 고도화에 필요한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인증취득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 (45,000천원/기업당)
-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11월 14일까지

III

세부내용

□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역										
드론 원천기술 고도화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드론 원천(핵심)기술 개발 및 고도화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재료비, 외주제작비, 전문가활용비, 시험분석·인증비, 지식재산보호비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세목</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재료비</td> <td>재료, 원료 구입 비용</td> </tr> <tr> <td>외주용역비</td> <td>일부 공정에 대해 의뢰·제작하는 비용</td> </tr> <tr> <td>전문가활용비</td> <td>원천기술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에 필요한 비용</td> </tr> <tr> <td>지급수수료</td> <td>시험분석, 인증취득, 특허출원, 회계정산 비용 등</td> </tr> </tbody> </table>	세목	내용	재료비	재료, 원료 구입 비용	외주용역비	일부 공정에 대해 의뢰·제작하는 비용	전문가활용비	원천기술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에 필요한 비용	지급수수료	시험분석, 인증취득, 특허출원, 회계정산 비용 등
	세목	내용									
	재료비	재료, 원료 구입 비용									
	외주용역비	일부 공정에 대해 의뢰·제작하는 비용									
전문가활용비	원천기술관련 외부 전문가 자문에 필요한 비용										
지급수수료	시험분석, 인증취득, 특허출원, 회계정산 비용 등										
지원목표	• 4개 내외, 도비 45,000천원/기업당 이내 지원										
기업 자부담금	• 경기도 지원금의 30%이상 현금 매칭 필수										

□ 평가 및 선정 기준

- 평가방법 : 대면(발표)평가 * 기업별 20분(발표 10분+질의응답 10분)
- 평가일정 : 5월초 예정
- 평가기준 : 지원의 적합성(20), 목표 및 계획의 적합성(30), 기술성 및 시장성(30), 상용화 계획 및 파급효과(20)로 구성

평가항목	평가내용
지원의 적합성(20)	지원의 필요성 사업추진 및 사업수행을 위한 신청기업의 보유역량·의지
목표 및 계획의 적합성(30)	일정별 추진(제작)내용 및 사업비 사용 계획의 합리성(기간 등 고려)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고도화 계획의 명확성 및 적정성
기술성 및 시장성(30)	원천(핵심)기술의 차별화 정도, 기존 유사제품과의 비교경쟁력
상용화 계획 및 파급효과(20)	상용화 계획 및 시장창출, 수입대체효과 가능성

- 가점사항 : 창업 7년 이내 기업 대상 가점 3점
 - * 업력기준 : (개인)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 (법인) 법인등기부등본상의 회사성립연월일
- 선정기준 : 평가위원회 종합점수 평균 60점 이상을 득한 신청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우선 협약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추후 협약 포기 및 잔여예산 발생 시 차순위 기업 선정
 - * 동점자 발생 시 기술성 및 시장성, 목표 및 계획의 적합성, 지원의 적합성, 상용화 계획 및 파급효과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지원방법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서 수정 이후 2차 협약 체결(주관기관-선정기업) 협약 체결
- 협약체결 관련 요구서류 확인을 통해 협약체결 후 지원금 선지급

※ **재원별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필수**

- 보험기간은 2026년 2월 28일까지로 하고, 발행비용은 선정기업에서 부담

※ 「2025년 드론산업 육성지원 사업」전용 계좌로 관리

- 신규 계좌 발급 또는 잔액이 0원인 기존 사용 계좌를 사용하여 전용 계좌에 관리
- 기업 경비 및 타지원사업 지원금 관리계좌와 혼용 사용 등 절대 불가하고, 사업비 유용 시 협약 해약 및 제재조치 진행

※ **협약시점에 협약체결 관련 요구서류 중 일부 미제출 시 협약체결 불가**

- 협약종료일 이후 최종평가 및 사업비 사용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불인정금액 및 잔액 환수

○ 추진절차 및 일정(안)

추진절차	추진내용	일정
사업공고 및 홍보, 신청접수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4.23.
▼		
선정평가(대면) 및 지원대상자 결정	○ 1차 서류검토(전담기관의 자격요건 확인) ○ 2차 발표평가 (단, 3배수 이상 접수 시 서면평가 先진행가능하며 평가 기준 및 선정기준은 공고 상 대면평가 기준과 동일)	5월초
▼		
협약체결 및 지원금 지급, 사업추진	○ 협약구비서류 접수 및 협약체결*, 지원금 선지급 * 기업자부담 입금내역 및 이행(지급)보증보험 등 확인 ○ 협약기업 대상 사업비 집행요령 안내	5월중
▼		
중간점검	○ 계획 대비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현황 점검 (사안에 따라 수시 점검 가능)	9월중
▼		
결과보고서 접수	○ 사업(협약)기간(~11.14.) 종료에 따른 결과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접수	~11월 21일
▼		
사업비 정산 및 최종평가(대면)	○ 사업계획 대비 최종 수행결과에 대한 대면(발표)평가 - 과제추진 결과, '성공/실패' 판정 ○ 사업비 정산을 통한 불인정 금액 등 정산금 확정·통보	11월 말 ~ 12월 초
▼		
사후관리	○ 기업별 정산금 환수 ○ 우수사례 발굴	12월 말

IV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5년 3월 27일(목) ~ 4월 23일(수) 23:59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사업공고)
- 제출요령 : 1개의 압축파일로 접수
(예시) (재)경기테크노파크_원천기술고도화지원.zip
- 제출서류 : 아래 표의 제출서류는 공고일(3월 27일) 이후의 서류로 발급·작성하여 제출

연번	제출서류	제출여부	비고
1	신청서 및 계획서	필수	제공서식
2	사업자등록증명	필수	홈택스
2-1	공장등록증명	해당시	정부24
3	법인등기부등본(창업기업 가점확인용)	해당시	법원등기소
4	국세완납증명	필수	홈택스
5	지방세 납세증명서	필수	정부24
6	중소기업확인서	필수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7	서약서	필수	제공서식
8	정보활용동의서	필수	제공서식
9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필수	제공서식
10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필수	제공서식
11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여부 약약서	필수	제공서식
1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참여인력 확인용)	필수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13	최근2개년 재무제표(2023년, 2024년)	필수	홈택스
14	구매의향서, 양해각서(MOU), 구매주문서	선택	자체서식

V

주의사항

□ 지원제외 대상

- 2025년에 경기도외 타시·도로 이전 계획이 있는 기업(지원자격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 기업)
- 동일 과제내용에 대하여 타 과제 및 기관(정부, 자치단체, 조합, 단체, 정부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
- 공고기간 동안 체납이 해소되지 않는 기업
- 부채비율이 1000% 초과 또는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과제 신청일 이후 사업기간 중 부도, 법정관리, 휴·폐업 등 사업의 정상 추진이 어려운 기업
-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하거나 선정이후 과제추진 중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기업
- 필수 제출서류 중 일부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등
- 신청기업의 착오 및 기재 오류로 인하여 보완자료 미제출시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제출서류 상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 지원금 환수, 사업 참여제한, 제재사실 공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경기도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의거해 법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 적용법률
 - ↳ (공정) ① 공정거래법, ② 하도급법, ③ 표시광고법
 - ↳ (노동) 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
 - ↳ (환경) ⑥ 폐기물관리법, ⑦ 대기환경보전법, ⑧ 소음진동관리법, ⑨ 물환경보전법
 - ↳ (납세) 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
- ※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별첨]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참고

VI

문의처

□ 경기테크노파크 미래사업팀 드론사업 담당자 031)500-3159

경기도 고시 제2025-23호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 고시

도내 기업의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하고 기업선정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경기도 법 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의 법 위반기업 지원 제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 1. 17.

경 기 도 지 사

1. 추진목적 : 기업의 법 준수 문화 확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로 기업 간 공정한 경쟁과 기업 성장 경영문화 전환 등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적용대상 : 경기도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기업
- (도내 기업) 등기부등록상 주 사무소, 영업소, 생산시설 등이 도내에 있는 기업
3. 적용사업 : 道 각종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 적용하되, 아래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 적용 제외
가. 제외사업은 향후 법위반기업 지원제한 위원회 심의에 따라 제한기준 적용 대상사업으로 전환 될 수 있음
나. 사업유형별 조례 적용 제외사업
 - 1) (계도·개선사업) 법령준수를 위한 계도와 개선 목적의 사업
 - 2) (사업운영비·소액사업) 예산용도가 사업운영비 한정, 소액·다수기업 지원사업
 - 3) (비경쟁사업) 기업수요가 비상시적이고 기업 필요성에 따라 순차 지원 사업
 - 4) (자금·융자지원 사업) 자금 및 신용보증 지원사업으로 수익자가 부담
 - 5) (시·군 보조(매칭) 사업) 도비 보조 또는 매칭비율에 따른 시군 지원사업
 - 6) (소상공인 지원 사업) 소상공인 지원 및 목적 용도의 사업
 - 7) (투자유치 사업) 경기도 투자유치에 따른 지원(인센티브) 사업
4. 위반사실 적용법률 :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분야 11개 법률
가. 적용법률
 - 1) (공정) ❶ 공정거래법 ❷ 하도급법 ❸ 표시광고법
 - 2) (노동) ❹ 근로기준법 ❺ 산업안전보건법
 - 3) (환경) ❻ 폐기물관리법 ❼ 대기환경보전법 ❽ 소음진동관리법 ❾ 물환경보전법
 - 4) (납세) ❿ 국세기본법 ⓫ 지방세기본법
 나. 위반 사실 적용 법률은 사업 부서별(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침·기본계획상 추가 운영 가능
5. 위반사실 조회기간 : 사업 공모일(모집일) 기준 2년 이내
가.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처분, 과징금, 과태료
나. 법 위반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고소·고발건은 확정 판결 확인 시 제한기준 적용
6. 사업참여 제한조건 : 법 위반 사실 확인시(1회 이상) 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가. 사업자 선정 후 과거 법 위반 사실 확인 시[법위반사실여부 확인서(서식2) 내용과 상이] 사업 취소·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
나. 사업자 선정 후 신규 법 위반 시 사업 부서별(사업별) 법 위반일 기준 사업취소 등 제한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음
7. 법위반사실 확인 : 사업 부서에서 기업의 법 위반 사실 확인
가. (공정)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처분내역 조회
나. (노동) 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지청 조회
다. (환경) 기업 소재지 관할 시·군 조회
라. (납세)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확인

8. 이의 및 구제신청 : 법 위반 사실로 제한 기준 적용 사실이 통보된 날로부터 7일 이내 대상자는 소명 내용이 포함된 이의 및 구제신청서(서식3) 제출
가. 사업자선정위원회 등(실국 또는 수탁기관)에서는 이의신청 기한 경과 후 14일 이내에 이의 및 구제신청서 검토 후(필요시 기업 출석 소명) 사업자 선정 전 구제여부 결정 및 통보
※ 기업의 권리구제, 행정절차 이행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결정 기한 연장 가능
나. 삭제
9.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서식1), 기업의 범위반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서식2)
10. 고시 효력일 : 고시일 ~ 차기 고시일 전까지
11.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기업육성과(☎031-8030-2992, -2995)
- 붙임 1. (서식1) 기업의 범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2. (서식2) 기업의 범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인서
3. (서식3) 이의 및 구제신청서